

영남대학교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정 1973. 3. 1. 학처장회의	개정 2007. 2.13. 교무위원회	
개정 1979. 9. 1. 학처장회의	개정 2008. 6.10. 교무위원회	
개정 1981. 9. 3. 학처장회의	개정 2009. 6.16. 교무위원회	
개정 1983. 4.19. 학처장회의	개정 2010.12.14. 교무위원회	
개정 1983.12.29. 학처장회의	개정 2011.11.15. 교무위원회	
개정 1984. 6. 5. 학처장회의	개정 2012. 2.21. 교무위원회	
개정 1984. 8.30. 학처장회의	개정 2012. 5.22. 교무위원회	
개정 1985. 9. 3. 교무위원회	개정 2013. 7. 1. 교무위원회	
개정 1985.11.19. 교무위원회	개정 2014. 1.28. 교무위원회	
개정 1986. 8.11. 교무위원회	개정 2014.12.23. 교무위원회	
개정 1987. 6. 9. 교무위원회		
개정 1987. 8.27. 교무위원회		
개정 1988. 6.14. 교무위원회		
개정 1989. 8.22. 교무위원회		
개정 1991. 6.18. 교무위원회		
개정 1991.11.19. 교무위원회		
개정 1992. 8.21. 교무위원회		
개정 1992.12. 7. 교무위원회		
개정 1993. 8.19. 교무위원회		
개정 1993.12.14. 교무위원회		
개정 1994. 6.21. 교무위원회		
개정 1994.12.13. 교무위원회		
개정 1996. 1.22. 교무위원회		
개정 1997. 1.28. 교무위원회		
개정 1997. 5.15. 교무위원회		
개정 1998. 3.24. 교무위원회		
개정 1999. 2.18. 교무위원회		
개정 1999. 3.30. 교무위원회		
개정 2000. 5. 9. 교무위원회		
개정 2001. 9.25. 교무위원회		
개정 2001.11.27. 교무위원회		
개정 2002. 1.29. 교무위원회		
개정 2002. 9.10. 교무위원회		
개정 2003. 2.11. 교무위원회		
개정 2004. 2.24. 교무위원회		
개정 2005. 1.11. 교무위원회		
개정 2005. 2.23. 교무위원회		
개정 2006. 2. 7. 교무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학업이수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수업

제2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된다.<개정 2007.2.13>

- ②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단위등록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 ③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총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 2.24.>

제2조의2(학점단위등록) ① 우리 대학교 학칙 제5조의 수업연한(의예과는 교육과정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수료)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과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이 학점단위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11.,2013.7.1.,2014.12.23.>

- 1. 1학점 ~ 3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신설 2013.7.1.>
- 2. 4학점 ~ 6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신설 2013.7.1.>
- 3. 7학점 ~ 9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신설 2013.7.1.>
- 4. 10학점 이상 :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신설 2013.7.1.>

- ② 재입학하는 학생으로서 학점단위등록 대상자는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학점단위등록금과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2.24., 2013.7.1.>
- ③ 학점단위등록 대상자는 수강신청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 하여야 한다.<개정 99. 2. 18·2007.2.13>
- ④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제2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류기간에는 학점단위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신설 2007.2.13>

제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당해학기 이수하고자하는 교과목을 결정하여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우리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9>

- ② 삭제(1994. 6. 21)
- ③ 삭제<2000. 5. 9>
- ④ 삭제(96.1.22)
- ⑤ 교과목은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으로 구분하며 학칙 제28조 및 제33조에 의한 매학기 수강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0.5.9.·2002.9.10.·2003.2.11.>
 - 1.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다.
 - 2. 선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목은 해당 선수과목을 이수한 후 수강신청할 수 있다.

3. 1, 2학기에 연강되는 교과목은 계속 이수하여야 하며, 한학기를 미이수 또는 실격한 경우에는 학기를 맞추어 이수하여야 한다.
4. 타 학부(과, 전공)의 실험·실습·실기과목 및 타과 이수불가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00. 5. 9>
5. 교과목의 배정학점을 변경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개정 2000. 5. 9>
6. R.O.T.C 교육을 받는 제 3, 4학년 학생의 군사학 과목은 한학기당 2학점씩 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분반이 지정되어 있는 과목은 지정된 반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8. 삭 제<2000. 5. 9>
9. 교양과목 중 소속학부(과·전공)의 이수 불가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00.5.9.·2003.2.11.>
10. 삭 제<2000. 5. 9>

- ⑥ 수강신청자는 소정기일내에 확정된 수강신청 내역을 우리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9>
- ⑦ 인터넷강의 교과목은 학기당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00. 5. 9, 개정 2006.2.7>
 1. 1·2·3학년 : 6학점
 2. 4학년 : 9학점(단, 교외인터넷 교과목이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⑧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졸업최저이수학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2.13>
 1. 120학점 이상 140학점 미만 : 16학점(건축학전공 포함)
 2. 140학점 이상 160학점 미만 : 18학점
 3. 160학점 이상 : 20학점(건축학전공 제외)
- ⑨ 매학기 수강신청 최저학점은 6학점으로 하며, 6학점 미만 수강신청한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부여한다. 단, 최종 졸업학기 이후에는 수강신청 최저학점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07.2.13>
- ⑩ 교류 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류 대학교에 개설된 교과목을 제외한 다른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다만, 국내 학점교류 협약 대학(원)에서 이수하는 학생은 우리 대학교와 교류 대학교의 수강신청 학점을 합산하여 학생 본인의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신청 할 수 있다.<신설 2010.12.14>

제3조의2(수강취소) ① 학생은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6학점 이내로 소정의 기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5. 2.23>

- ② 취소한 수강과목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과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05. 2.23>

제3조의3(재이수) ① 학생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한 학기에 6학점 이내, 재학기간 중 30학점까지 재이수를 신청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B+” 이상인 교과목, 폐지된 교과목, 예·체능계열의 전공 실기 교과목 및 의학과 의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05. 2.23, 개정 2010.12.14., 2013.7.1.>

- ② 재이수는 1,2학기 및 계절학기에 가능하며, 과목별 1회에 한한다.<신설 2013.7.1.>

- ③ 학생이 기이수한 교과목을 재 이수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기간에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신설 2005. 2.23., 개정 2013.7.1.>

- ④ 성적은 재이수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되 최대 “A” 까지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실격한 경우 기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한다.<신설 2005. 2.23, 개정 2010.12.14., 2013.7.1.>

제4조(수강시간 변경) ① 삭제(1996.1.22)

- ② 제 1학년은 수강시간(주·야간)을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부(과)장 및 학장(“야간강좌개설부장” 포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9.6.16>

제5조(수강정정) ①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일 내에 본인 이 직접 취소 또는 변경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9.25.:2002.9.10.>

- ② 삭 제<2000. 5. 9>

제5조의2(수강승인 불허) ① 수강신청 또는 정정 신청한 교과목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승인 및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학기 취득성적을 인정 하지 아니한다.

1. 폐강된 교과목
2. 이 규정 제3조 5항의 구분에 따르지 않은 교과목
3. 학칙 제33조에 의한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
4. 이 규정 제4조에 의한 수강시간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수강시간을 변경하여 신청한 교과목
5. 이 규정 제17조의 2에 의한 성적포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 이수 교과목과 동일과 목

- ② 전항 제3호의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선정은 총장이 학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의3(전 과목이수의 포기) 등록한 학기에 수강신청을 아니하거나 수강신청후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이를 등록회수에 포함시키고 학사경고의 대상이 된다.

제6조 삭제(1996. 1. 22)

제6조의2 삭제(1996. 1. 22)

제7조(폐강) 수강신청자가 일정수 이하인 과목은 폐강하고 타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폐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의2(과목분반 및 수강 제한) ① 적정 수강인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과목은 강의실을 변경하거나 분반할 수 있다.

- ② 과목의 특성 및 교육목적상 필요할 경우 수강대상 학과 및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분반 및 수강대상 학과와 인원을 제한하고자 하는 담당교수는 학과장 및 학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분반 및 수강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조 삭제(1991. 6. 18)

제3장 학업성적 처리

제9조 삭제(1996. 1. 22)

제10조(성적평균) ①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은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에 교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 학점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단, P/F과목은 제외한다.

학기평점평균={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수강신청 총 학점수<개정 2000. 5. 9.·2004. 2.24.·2012.2.21>

② 졸업 종합성적의 평점평균은 다음과 같이 학적부에 등재된 취득과목별 평점에 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총 이수학점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단, P/F과목은 제외한다.

졸업종합평점평균={취득과목별 평점 × 과목별 학점수}의 합계/총 이수학점수<개정 2000. 5. 9.·2004. 2.24.·2012.2.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점평균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까지 산출하여 사용하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록하되 반올림하지 않는다.<개정 2002. 1. 29·2012.2.21>

④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의 성적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02. 1.29.·2004. 2.24.·2012.2.21>

1. 평점합계가 많은 자
2. 삭제
3. 신청과목수가 많은 자(P/F과목 포함)
4.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제10조의2(성적환산) 성적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성적평점 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신설 2012.2.21>

제11조(시험 및 평가) ① 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교과목의 당해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1.11.15>

③ 시험은 반드시 수강신청한 반에서 응시하여야 하며 다른 반에서 응시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학업성적은 강좌별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교과목을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출제, 공동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4.1.28.>

⑤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예·복습 및 출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4.1.28.>

⑥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성적은 당해학기 평가성적의 80%까지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 중 어느 하나만을 응시하였을 경우 그 응시한 성적만을 반영한다.<개정 2014.1.28.>

⑦ 예·복습은 임시시험, 과제, 팀 프로젝트, 토론 참석 등으로 하고, 이는 학기중 수시로 시행할 수 있으며 예·복습성적은 당해 학기 평가성적의 20%까지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8.>

⑧ 삭제<2014.1.28.>

⑨ 출석성적은 당해학기 평가성적의 20%까지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4.1.28.>

⑩ 균형평가는 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현장실습,

특강, 학점인정 교과목(P/F)은 균형평가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1.28.>

이수구분	평가기준
전공, 교직	B이상은 상위 70% 이하로 하되, A이상은 상위 30%를 초과할 수 없다.
교양, 일반선택	B이상은 상위 60% 이하로 하되, A이상은 상위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⑪ 다음 각 호의 과목은 제10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이상은 상위 50%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1.28.>

1. 외국어강의<신설 2014.1.28.>
2. 실험·실습<신설 2014.1.28.>
3. 교양 영어회화(원어민강좌)<신설 2014.1.28.>
4. 계약학과 개설 교과목<신설 2014.1.28.>

⑫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균형평가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4.1.28.>

⑬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당해 학기 성적을 평가한 후 관련서류를 2년까지 보관하며, 비임교원은 성적관련 서류를 학기 성적 정정 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학부(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00.5.9.·개정 2002.9.10.,2014.1.28.>

제11조의 2(시험부정행위자 처벌) ①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아래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대리시험의 경우는 청탁자와 응시자 쌍방의 당해학기 시험 전 과목을 무효로 하고 무기정학에 처한다. 시험장외 답안지 작성의 경우도 동일하다.
2. 기타 부정행위는 당해 과목을 실격하고 그 이후 시험과목도 6학점을 더하여 실격 처분한다. 다만, 해당과목 이후 분이 6학점 미만일 때에는 해당과목 이전으로 소급하여 실격 처분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처벌은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고 감독교수의 증언, 증거물에 의하여 소속 대학 학장이 처벌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총장은 처벌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출석인정) ① 삭제<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 학생처장, 학생역량개발처장, 또는 대학장(독립학부장)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6.2.7·2008.6.10·2010.12.14>

1.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
2.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3. 본인의 결혼 : 7일
4. 부모의 사망 : 7일
5. 조부모의 사망 : 3일
6. 징병검사 또는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③ 제2항에 의한 공인출석 인정기간은 총 수업일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2.7>

- ④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06.2.7>

제13조(체육특기자 특별조치) ① 매학기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성적을 특별조치할 수 있다. 다만, 특별조치 내용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체육특기자가 훈련에 소홀하거나 교내외의 생활이 불량하여 특기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날 때에는 전항의 특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의 2(성적 공시 및 이의 신청)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제11조제8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성적은 소정기일 내에 우리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을 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별도의 성적 공시는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담당교수가 부득이하게 입력을 할 수 없는 경우 학부(과)장이 입력을 할 수 있다.<개정 2001. 9. 25·2010.12.14>

- ② 학생은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성적공시 기간내에 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성적통보) 매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및 출력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0.12.14>

제14조의 2(학사경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 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와 소속 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유급을 적용하는 학부(과) 및 체육특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2.13·2010.12.14>

1. 재학 중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자
2. 이 규정 제3조제9항 및 제5조의3에 해당하는 자

- ② 전항의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의 산출은 제10조 제1항에 의한다.<개정 2000. 5. 9>

- ③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 횟수가 통산 4회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 처분한다. 다만, 최종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 또는 수료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12.14>

- ④ 학점단위등록자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자에게는 학사경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 5. 9>

제15조 삭제(1996. 1. 22)

제16조 삭제(1996. 1. 22)

제17조(학기도중 학적변동자의 성적) ①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전에 휴학한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5. 1.11.>

- ② 삭제(1988. 6. 14)

- ③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기말시험전에 입영휴학자는 입영일전까지 과목담당교수의 성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제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받은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 1.11.>

제17조의 2(성적포기) 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2.5)이하인 교과목은 매학기당 6학점 이내로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 재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00. 5. 9·2011.11.15>

- ②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교과목중 대체과목 또는 동일과목이 지정되지 아니한 교과목은 한 학기에 6학점 이내로 포기할 수 있으며, 재학중 12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 재학생은 제외한다.<신설 2011.11.15>

- ③ 성적을 포기 하고자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에 성적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9·2011.11.15>

- ④ 성적포기를 신청한 교과목은 학적변동(휴학, 제적)에 관계없이 취득과목에서 삭제하며 포기한 교과목은 다시 취득하지 않는 한 회복할 수 없다.<개정 2000. 5. 9·2011.11.15>
- ⑤ 삭 제<2000. 5. 9>

제4장 휴학·복학·재입학

제18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단, 의과대학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를 위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8. 3. 24·2007.2.13 · 2008.6.10·2011.11.15>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신설 2008.6.10., 개정 ·2011.11.15.,2014.1.28.>

1. 삭 제<2011.11.15>

2.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 학생 휴학

3. 국가고시 합격자의 연수원 교육을 위한 휴학

4. 휴학기간 초과자의 질병으로 인한 휴학(1년)

5. 유급에 따른 휴학

6. 삭 제<2011.11.15>

7.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1년)<개정 2014.1.28.>

8. 창업에 따른 휴학(2년)<신설 2014.1.28.>

- ③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신설 2011.11.15>

제19조(일반휴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기간에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0. 5. 9·2005. 1.11.>

- ② 등록한 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수업일수 4분의 3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은 군 입영 또는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당해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개정 2000. 5. 9·2005. 1.11·2012.5.22>

- ③ 등록한 자가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휴학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전된다.<개정 2002. 1. 29·2007.2.13 · 2008.6.10>

1. 수업일수 1/4 이전 휴학 : 등록금 100%

2. 수업일수 1/4 초과 수업일수 1/2 이전 휴학 : 수업료 50%<개정 2008.6.10>

3. 수업일수 1/2 초과 휴학 : 수업료 0%개정 2008.6.10>

- ④ 삭 제<2002. 1. 29.>

제20조(입영휴학) ① 재학 또는 일반 휴학중인 학생이 군복무로 인하여 군휴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영하기 7일전부터 입영일 사이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휴학을 신청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5.9 · 2008.6.10>

- ② 삭제<2008.6.10>

- ③ 등록한 자가 수업일수 4분의 3이내에 입영 휴학한 경우에 휴학 때 등록금은 전역후 복

학학기의 등록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4분의 3이후에 입영휴학한자는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 5. 9>

제21조(휴학취소) ① 일반휴학을 신청 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학취소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 5. 9>

② 입영휴학을 신청한 자가 귀향 또는 입영연기 되었을 때는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9·2004. 2. 24.>

제22조(일반휴학자의 복학) 일반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 5. 9>

제23조(입영휴학자의 복학) ① 입영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공공기관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 5. 9·2005. 1.11.>

② 입영휴학한 자는 전역 후 학기 개시일이 2회 지나기 전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처리한다. 다만, 휴학기간을 연장 신청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0. 5. 9·2011.11.15>

제24조(재입학) ①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5.9 · 2008.6.10· 2010.12.14>

② 재입학하는 학년은 제적 당시의 재학학년을 기준으로 사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과로 인하여 지정된 학부(과)에 재입학하는 학생은 취득학점 등에 따라 학년을 재 사정한다.<개정 2000.5.9 · 2008.6.10>

③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신설 2010.12.14.>

제5장 교내 전부(과)<개정 2005. 1.11.>

제25조(자격) ① 교내 전부(과)는 전부(과) 직전학년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학업성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 1.28.·2005. 1.11.,2014.12.23.>

② 삭제(1997. 1. 28)

제25조의2(허용범위) 삭제<2014.12.23.>

제26조(절차) ① 교내 전부(과)를 지원하고자 자는 전부(과)원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고 소정 기일 내에 소속 학부(과)장 및 학장의 승인과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과)의 학부(과)장 및 학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 1.28.· 2005. 1.11.·2010.12.14.,2014.12.23.>

② 전부(과)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선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 1. 28.·2005. 1.11.>

제26조의 2(이수과목) 전부(과)한 자는 전부(과)가 허가된 학부(과), 학년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전부(과) 대학장이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9. 2.18.·2005. 1.11.·2006.2.7.,2014.12.23.>

제6장 능력별 조기졸업

- 제27조(자격) ① 능력별 조기졸업 대상자는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매 학기당 4.00 이상으로서 6개 학기 또는 7개 학기를 수강하여 졸업최저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졸업논문 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졸업사정기준에 도달한 자로 한다.<개정 2007.2.13>
- ②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과대학 재적생은 능력별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09.6.16>
- ③ 능력별 조기졸업 희망자는 최종학기 소정의 신청기간에 능력별 조기졸업 희망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2.13·2009.6.16>

제7장 비실험대학 입학자의 학업이수

- 제28조(교과과정 이수기준) ① 실험대학 시행 이전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실험대학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자의 기취득한 학점과 성적 및 구분은 그대로 인정한다.
- ② 복학 또는 재입학한 자는 실험대학의 해당학년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구 교과과정의 교과목으로서 실험대학 교과과정상 폐지된 교과목은 이수하지 아니한다.
- ④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수학 해당학기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제29조(졸업학점) 실험대학 시행이전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실험대학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자의 졸업학점은 [별표 2]에 의한다.<개정 2012.2.21>

제8장 계절학기<개정 2010.12.14.>

- 제30조(수강대상) 계절학기는 재적생으로서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개정 2007.2.13·2010.12.14·2012.5.22>
- 제31조(이수학점) 계절학기의 이수학점은 학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6학점 범위내로 한다.<개정 2007.2.13·2010.12.14>
- 제32조(개설과목) 계절학기 개설 과목은 당해 동일 정규 학기에 개설 또는 편성된 과목 중에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2.13·2010.12.14>
- 제33조(수강료)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2.13·2010.12.14>
- 제34조(성적처리) ①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학기 평점 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12.5.22.>
- ② 휴학중인 학생도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으며, 성적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휴학중인 학생이 계절학기 학점취득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후 최소한 한 학기는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신설 2012.5.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정 시행과 더불어 학생등록에 관한 시행세칙(1968.5.1), 학업성적처리에 관한 집무요령(1968.5.1), 학년조정요령(1968.7.31), 교과목의 학수번호 제정원칙(1968.5.28), 학기도중 입대자의 출석, 예습 및 시험성적처리요령(1968.3.1), 학업성적 평균점 산출요령(1968.7.30), 체육특기자성적 특별조치(1968.6.25), 학생 출석성적 산출에 관한 유의사항(1968.12.23), 성적인정에 관한 유의사항(1968.12.13), 성적이기에 관한 유의사항(1968.12.23)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79. 9.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군입대휴학 사무처리요령(1968.9.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1. 9. 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4.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실험대학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의 학적처리에 관한 규정(1981.11.10)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구 규정 제16조 성적불량과목의 재이수는 1984년 1학기까지 적용한다.

부칙(1984. 6.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구 규정 제16조 성적불량과목의 재이수는 1984년 2학기까지 적용한다.

부칙(1984. 8. 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9. 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입학 특례) 1981.2.28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할 때에는 제24조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적된 날로부터 8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에 소속 대학장 경유 교무처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1985. 11.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8. 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6.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8.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6. 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6. 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9년 9월 1일 부터 1991년 8월 31일 사이에 재학중 입영한 자의 복학은 구 규정 제23조(입영휴학자의 복학)을 적용한다.

부칙(1991. 11.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8. 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2.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1항은 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1993. 8.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2. 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6. 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6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 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에 영남대학교 학사경고에 관한 규정 및 영남대학교 시험부정행위 처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7. 1.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5. 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3.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2. 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3. 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5.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9.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2 제1항은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학기도중 학적변동자의 성적 처리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7조는 2004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수강취소) 및 제3조의3(재이수)은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편입학자는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성적불량과목 포기제도의 폐지) 제17조의2(성적불량과목의 포기)는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편입학자는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만 적용한다.

부칙(2006. 2.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13)

제1조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재이수)은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편입학자는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1.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5조는 201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54 1]

성적평점 환산기준표

※ 환산점수 산출법(소수둘째자리 반올림)

1. 평점평균이 4.0 만점인 경우 : 환산점수 = $60 + ((\text{평점평균} - 1) \times 40 / 3.0)$
2. 평점평균이 4.5 만점인 경우 : 환산점수 = $60 + ((\text{평점평균} - 1) \times 40 / 3.5)$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4.50	100.0	4.00	94.3	3.50	88.6	3.00	82.9	2.50	77.1	2.00	71.4	1.50	65.7
4.49	99.9	3.99	94.2	3.49	88.5	2.99	82.7	2.49	77.0	1.99	71.3	1.49	65.6
4.48	99.8	3.98	94.1	3.48	88.3	2.98	82.6	2.48	76.9	1.98	71.2	1.48	65.5
4.47	99.7	3.97	93.9	3.47	88.2	2.97	82.5	2.47	76.8	1.97	71.1	1.47	65.4
4.46	99.5	3.96	93.8	3.46	88.1	2.96	82.4	2.46	76.7	1.96	71.0	1.46	65.3
4.45	99.4	3.95	93.7	3.45	88.0	2.95	82.3	2.45	76.6	1.95	70.9	1.45	65.1
4.44	99.3	3.94	93.6	3.44	87.9	2.94	82.2	2.44	76.5	1.94	70.7	1.44	65.0
4.43	99.2	3.93	93.5	3.43	87.8	2.93	82.1	2.43	76.3	1.93	70.6	1.43	64.9
4.42	99.1	3.92	93.4	3.42	87.7	2.92	81.9	2.42	76.2	1.92	70.5	1.42	64.8
4.41	99.0	3.91	93.3	3.41	87.5	2.91	81.8	2.41	76.1	1.91	70.4	1.41	64.7
4.40	98.9	3.90	93.1	3.40	87.4	2.90	81.7	2.40	76.0	1.90	70.3	1.40	64.6
4.39	98.7	3.89	93.0	3.39	87.3	2.89	81.6	2.39	75.9	1.89	70.2	1.39	64.5
4.38	98.6	3.88	92.9	3.38	87.2	2.88	81.5	2.38	75.8	1.88	70.1	1.38	64.3
4.37	98.5	3.87	92.8	3.37	87.1	2.87	81.4	2.37	75.7	1.87	69.9	1.37	64.2
4.36	98.4	3.86	92.7	3.36	87.0	2.86	81.3	2.36	75.5	1.86	69.8	1.36	64.1
4.35	98.3	3.85	92.6	3.35	86.9	2.85	81.1	2.35	75.4	1.85	69.7	1.35	64.0
4.34	98.2	3.84	92.5	3.34	86.7	2.84	81.0	2.34	75.3	1.84	69.6	1.34	63.9
4.33	98.1	3.83	92.3	3.33	86.6	2.83	80.9	2.33	75.2	1.83	69.5	1.33	63.8
4.32	97.9	3.82	92.2	3.32	86.5	2.82	80.8	2.32	75.1	1.82	69.4	1.32	63.7
4.31	97.8	3.81	92.1	3.31	86.4	2.81	80.7	2.31	75.0	1.81	69.3	1.31	63.5
4.30	97.7	3.80	92.0	3.30	86.3	2.80	80.6	2.30	74.9	1.80	69.1	1.30	63.4
4.29	97.6	3.79	91.9	3.29	86.2	2.79	80.5	2.29	74.7	1.79	69.0	1.29	63.3
4.28	97.5	3.78	91.8	3.28	86.1	2.78	80.3	2.28	74.6	1.78	68.9	1.28	63.2
4.27	97.4	3.77	91.7	3.27	85.9	2.77	80.2	2.27	74.5	1.77	68.8	1.27	63.1
4.26	97.3	3.76	91.5	3.26	85.8	2.76	80.1	2.26	74.4	1.76	68.7	1.26	63.0
4.25	97.1	3.75	91.4	3.25	85.7	2.75	80.0	2.25	74.3	1.75	68.6	1.25	62.9
4.24	97.0	3.74	91.3	3.24	85.6	2.74	79.9	2.24	74.2	1.74	68.5	1.24	62.7
4.23	96.9	3.73	91.2	3.23	85.5	2.73	79.8	2.23	74.1	1.73	68.3	1.23	62.6
4.22	96.8	3.72	91.1	3.22	85.4	2.72	79.7	2.22	73.9	1.72	68.2	1.22	62.5
4.21	96.7	3.71	91.0	3.21	85.3	2.71	79.5	2.21	73.8	1.71	68.1	1.21	62.4
4.20	96.6	3.70	90.9	3.20	85.1	2.70	79.4	2.20	73.7	1.70	68.0	1.20	62.3
4.19	96.5	3.69	90.7	3.19	85.0	2.69	79.3	2.19	73.6	1.69	67.9	1.19	62.2
4.18	96.3	3.68	90.6	3.18	84.9	2.68	79.2	2.18	73.5	1.68	67.8	1.18	62.1
4.17	96.2	3.67	90.5	3.17	84.8	2.67	79.1	2.17	73.4	1.67	67.7	1.17	61.9
4.16	96.1	3.66	90.4	3.16	84.7	2.66	79.0	2.16	73.3	1.66	67.5	1.16	61.8
4.15	96.0	3.65	90.3	3.15	84.6	2.65	78.9	2.15	73.1	1.65	67.4	1.15	61.7
4.14	95.9	3.64	90.2	3.14	84.5	2.64	78.7	2.14	73.0	1.64	67.3	1.14	61.6
4.13	95.8	3.63	90.1	3.13	84.3	2.63	78.6	2.13	72.9	1.63	67.2	1.13	61.5
4.12	95.7	3.62	89.9	3.12	84.2	2.62	78.5	2.12	72.8	1.62	67.1	1.12	61.4
4.11	95.5	3.61	89.8	3.11	84.1	2.61	78.4	2.11	72.7	1.61	67.0	1.11	61.3
4.10	95.4	3.60	89.7	3.10	84.0	2.60	78.3	2.10	72.6	1.60	66.9	1.10	61.1
4.09	95.3	3.59	89.6	3.09	83.9	2.59	78.2	2.09	72.5	1.59	66.7	1.09	61.0
4.08	95.2	3.58	89.5	3.08	83.8	2.58	78.1	2.08	72.3	1.58	66.6	1.08	60.9
4.07	95.1	3.57	89.4	3.07	83.7	2.57	77.9	2.07	72.2	1.57	66.5	1.07	60.8
4.06	95.0	3.56	89.3	3.06	83.5	2.56	77.8	2.06	72.1	1.56	66.4	1.06	60.7
4.05	94.9	3.55	89.1	3.05	83.4	2.55	77.7	2.05	72.0	1.55	66.3	1.05	60.6
4.04	94.7	3.54	89.0	3.04	83.3	2.54	77.6	2.04	71.9	1.54	66.2	1.04	60.5
4.03	94.6	3.53	88.9	3.03	83.2	2.53	77.5	2.03	71.8	1.53	66.1	1.03	60.3
4.02	94.5	3.52	88.8	3.02	83.1	2.52	77.4	2.02	71.7	1.52	65.9	1.02	60.2
4.01	94.4	3.51	88.7	3.01	83.0	2.51	77.3	2.01	71.5	1.51	65.8	1.01	60.1
												1.00	60.0

[별표 2]

복학생(재입학 포함)에 관한 최저졸업 학점수표

기등록 및 이수학기 수	잔여학기	최저졸업학점 (졸업학점 :140인경우)	최저졸업학점 (졸업학점 :150인경우)	비고
1	7	142	151	
2	6	144	152	
3	5	146	153	
4	4	148	154	
5	3	150	155	
6	2	152	156	
7	1	154	157	
8		160	160	